

# 2026년도 1차 이사회 결과보고

## 1 회의 개요

- ① 일 시: 2026년 3월 27일(금) 11시 30분 ~ 12시
- ② 장 소: 올림픽회관 신관 1층 144호 대회의실
- ③ 출석임원: 22명(재적이사 37명 중 21명) 참석
  - 회 장 : 이성진
  - 부 회 장 : 강승호, 강태영, 권상수, 이경영, 홍창신
  - 사 무 총 장 : 김지선(사회자)
  - 이 사 : 김미영, 김용순, 김은아, 김재용, 김정미  
김태우, 박미란, 배재운, 안치영, 원자영,  
유인선, 이승환, 채유탕, 최학수
  - 감 사 : 김정균
- ④ 상정안건
  - 보고사항
    - 1. 전차회의록
    - 2. 2026년도 동호회 등록 및 2025년도 우수동호회 선정 결과 보고
  - 심의사항
    - 1. 2026년도 예산 변경(안)
    - 2.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 처무 규정 개정(안)
    - 3. 인사위원회 구성의 건

## 2 논의결과(주요내용)

(개회선언: 11시 30분)

이성진 회장 인사말씀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

2. 2026년도 동호회 등록 및 2025년도 우수동호회 선정 결과 보고

### ① 주요내용

#### 1. 전차회의록

2025년도 결산 이사회 회의록

- 일시: 2026년 2월 12일(목) 17시 ~ 17시 50분
- 장소: 올림픽회관 신관 1층 144호 대회의실
- 참석: 재적이사 37명 중 28명 참석

○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 : 원안대로 접수
2. 위원회 경과 보고 : 원안대로 접수
3. 임원 사임 보고 : 원안대로 접수

○ 심의사항

1. 2025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의 건: 원안대로 의결
2.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건: 원안대로 의결
3. 규약 및 규정 제·개정안: 원안대로 의결
4. 사단법인 전환 추진 및 발기인 구성(안) 승인의 건: 잠정 보류
5. 2026년도 정기총회 개최의 건: 심의안건 중 사단법인 전환건을 제외하고 원안 의결

#### 2. 2026년도 동호회 등록 및 2025년도 우수동호회 선정 결과 보고

관련근거

- 동호회 운영 내규 제10조(우수동호회 포상)
- 2026년도 제1차 대회 및 동호위원회 회의 결과(2026. 03. 12.)

2026년도 동호회 등록 현황

구분	동호회명	활동	연합회 회원	회장	총무	비고
재 등 록	버디버디	골프	14명	우수 박영진	당구 최영서	
	캐치테니스	테니스	14명	스쿼시 김도균	보디빌딩 김수지	
	조용한 독서와 담론 모임	독서	11명	카누 송승화	우슈 이새롬	
	종목단체 UTD	축구·풋살	15명	당구 노형민	육상 박용준	
	필레말래	러닝	13명	가라테 김정균	궁도 김용수	
	족구 동호회	족구	12명	근대5종 강현경	산악 조하연	
신규	에클레시아	봉사(종교)	10명	탁구 김현중	택견 안치영	
계			89명			

2025년도 우수 동호회 선정 결과

가. 우수 동호회 선정 결과

- 선정 방식: 실적 우수 단체 공동 선정 (위원회 의결)
- 대상 단체: '버디버디'(골프), '뿔래말래'(러닝)
- 포상 금액: 총 500,000원 (단체별 각 250,000원)

나. 주요 선정 사유

- 버디버디 (골프): 인트라넷 게시판 활동 기록과 사무처 행정 접수 내역 일치  
지원금 의존도가 낮고(5회 활동 중 1회 신청) 선행 활동 보고 등 자생력 우수
- 뿔래말래 (러닝): '허그런(아동학대예방 기부런)' 참여 등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실적 우수,  
코스 기록 공유 및 정기행사 홍보 등 게시판을 통한 소통 문화 확산 기여

다. 지급 및 행정 사항

- 근거: 개정된 동호회 운영 내규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 방법: 정기총회 시 상장 수여 이후 각 동호회 지정 계좌 입금

**③ 참석자 주요발언: 없음**

**④ 논의 결론: 원안 접수**

심의사항

## 1. 2026년도 예산 변경(안)

### ① 의결주문

- 2026년도 예산 변경(안) 심의·주문함

### ② 주요내용

- 대한체육회 인건비지원 및 회의실관리기금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2026년 예산 조정이 불가피 함
- 2026년 5월부터 사무처직원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 운영
-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절감을 통하여 약 4,265만원의 추가 이월금 확보하여 재정의 안전성 강화

## 1] 2026년도 예산 변경(안)

### 총괄

구분	26년 예산액 (a)	예산 변경액 (b)	증감 (c=b-a)	비 고
세입액(가) (전년도이월금 포함)	370,624,449	365,824,449	-4,800,000	육아기 단축근로지원금 감소
세출액(나)	239,662,462	192,203,990	-47,458,472	직원 2명->1명 축소
차기이월금 (가-나)	130,961,987	173,620,459	42,658,472	

### 2026년도 세입·세출 변경(안) 요약

- 세입

관	항	26년예산액 (a)	예산변경액 (b)	증감 (c=b-a)	변경 내역	
자체	회비	165,000,000	165,000,000	-		
	참가비	수강료	7,200,000	7,200,000	-	
		참가비 / 협찬금	11,000,000	11,000,000	-	
	기타수입	예금이자	200,000	200,000	-	
		고용노동부 지원금	7,200,000	2,400,000	-4,800,000	육아기 단축근로지원금 (사업주 지원금, 업무담당자 지원금) 감소 12개월->4개월
소 계		190,600,000	185,800,000	-4,800,000		
전년도이월금		180,024,449	180,024,449	-		
합 계		370,624,449	365,824,449	-4,800,000		

### ○ 세출

관	항	26년예산액 (a)	예산변경액 (b)	증감 (c=b-a)	내역
운영비	인건비	103,564,362	60,305,890	-43,258,472	직원 2명 -> 1명(급여)
	경상비	22,448,100	18,248,100	-4,200,000	직원 2명 -> 1명 (4대보험, 상여)
상조비	경조사	8,000,000	8,000,000	-	
	퇴직자 전별금	21,000,000	21,000,000	-	
	경조비	1,000,000	1,000,000	-	
회의비	총회이사회	3,950,000	3,950,000	-	
	기타회의	2,700,000	2,700,000	-	
사업비	교육비	8,500,000	8,500,000	-	
	체육활동지원	14,200,000	14,200,000	-	
	실천캠페인	1,800,000	1,800,000	-	
	동호회 지원	3,300,000	3,300,000	-	
	회원복지	27,500,000	27,500,000	-	
기타	임원활동 운영지원	16,700,000	16,700,000	-	
	예비비	5,000,000	5,000,000	-	
소 계		239,662,462	192,203,990	-47,458,472	
차기이월금		130,961,987	173,620,459	42,658,472	
합 계		370,624,449	365,824,449	-4,800,000	

### ③ 참석자 주요발언:

○ 사회자: 심의사항 1호, 26년도 예산 변경안입니다. 대한체육회 인건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른 예산 조정안이고요.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사무처 직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약 4,745만 원을 절감하고 최종 이월금 1억 7,362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회장: 이 부분은 아까 강승호 부회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더 줄여봅시다. 그리고 직원 2명의 고용 승계는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산안을 사무처에서 다시 조정한 다음에 감사님들께 먼저 보고 드리고 나서, 이사회 안건으로 다시 올려 서면 결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 저는 발언권만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지금 퇴직 전 별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회장님 말씀처럼 활동비도 필요하고 수당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연합회 식구니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위원회 수당이나 감사 수당 같은 것들은 올해 아예 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세요

○ ○ ○ ○ 부회장: 일단 심의 안건 자체가 예산 변경안인데 주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안건 주요 내용이 '직원 2명에서 1명 축소'를 전제로 나왔으니, 일단 사람을 줄이는 것에 대한 임원들의 찬반 의견부터 먼저 구하는 게 어떨까요? 이사회니까 찬반 의견을 여쭙고, 만약 2명을 유지하자고 의결이 되면 그걸 근거로 예산안을 다시 검토해 주시죠.

○ ○ ○ ○ 이사: 안건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규정을 찾아보니 '과실 행위를 제외하고 의사에 반해서 직원은 면직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직원들과 충분히 협의가 됐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또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굳이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 배경도 궁금합니다.

○ ○ ○ ○ 부회장: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예산 절감은 불가피하되 직원은 기존 2명으로 유지합니다. 대신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부분을 합의점으로 찾아서 정리하고, 그에 맞게 예산을 다시 변경해서 서면 결의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 ○ 이사: 인건비 절감 취지는 이해하지만, 연합회가 무슨 업무를 진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인력을 축소하면 일이 줄 텐데, 어떤 일이 줄고 어떻게 반영될지 논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재정을 안정화하려면 채용 확보 방안과 인력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목적성이 정립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동의나 의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회장: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문체부에 예산을 요청하고 있고, 노조 확대 운영 등 다방면으로 노력 중입니다.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과 직원 2명 유지 및 연봉제 전환을 골자로 예산을 다시 짜서 서면 결의로 상정하겠습니다.

④ 논의결론: 예산변경(안) 회장에게 위임 사무처에서 재조정하여 감사 보

고 후, 차기 서면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

## 2.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 처무 규정 개정(안)

### 3. 인사위원회 구성의 건

#### ① 의결주문

-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 처무 규정 개정(안)에 대해 심의·주문함
- 인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주문함.

#### ② 주요내용

#### □ 제안사유

- 연합회 사무처 운영 합리성 및 자체 정비
  - \* 2026년 1차 규정 개정 및 복지위원회(1차 2026.03.24.)
  - \* 「민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준용하여 최신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내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
-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 처무 규정과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 운영내규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

#### 가.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 처무 규정 개정(안)

##### <1> (제1장) 총칙 및 (제2장) 직제 개편

- 규정 목적 정비 (제1조 수정): 연합회 규약 개정에 따라 참조 조항을 제36조로 변경하고, 향후 총회 의결에 따른 조항 이동 가능성을 명시함.
- 직원 분류 체계 이동 (제2조 수정): 기존 제10조(직능분류) 내용을 제2조로 이동하여 직원의 분류(정규직, 계약직)를 규정 전면에 배치함.
- 조직 및 정원 규정 이동 (제3조~제4조 수정): 기존 제11조(기구) 및 제12조(정원)를 제2장 직제 조항으로 이동하여 체계를 정비함.
- 분장업무 주체 변경 (제5조 수정): 기존 '부서별' 분장업무 규정을 '직원별' 분장업무 및 위임전결사항으로 변경하여 개인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 <2> (제3장) 인사위원회 신설

- 인사위원회 설치 및 한시 운영 (제6조 신설):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되, 이사회에서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명시함.

- 구성 및 직무 규정 (제7조~제8조 신설): 위원장을 포함하여 5~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함.
- 의결 정족수 차등화 (제10조 신설): 일반 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나, 징계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 요건을 강화함.
- 비밀유지 및 객관성 확보 (제11조~제12조 신설): 사실조사 의뢰 권한과 회의 내용 비공개 및 직무상 취득 기밀 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함.

### <3> (제4장~제5장) 임용 및 상벌 규정 현행화

- 인사관리 적용 조항 이동 (제13조 수정): 기존 제2조(적용) 내용을 제4장으로 이동하여 채용, 보직, 면직 등에 관한 인사 관리 근거를 유지함.
- 채용 원칙 간소화 (제14조 수정): 기존 제3조의 복잡한 특별채용 조항을 삭제하고 공개경쟁시험 채용 원칙으로 단순화함.
- 결격사유 용어 및 범위 정비 (제16조 수정):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현행화하고, 임원 친족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 징계 기준 준용 (제19조 수정): 기존 이사회 결정 방식에서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징계양정기준을 준용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변경함.

### <4> (제6장) 희망퇴직 도입 및 권익 보장

- 희망퇴직 제도 도입 (제23조 신설): 경영상 사유 발생 시 이사회 의결로 시행하며, 근속 1년당 1개월분(최대 12개월 한도)의 위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 건강진단 주기 조정 (제24조 수정): 전 직원의 정기 건강진단 주기를 기존 매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

### <5> (제7장~제8장) 복무 및 휴가 체계 선진화

- 근무 및 휴게시간 명시 (제29조 수정): 09:00~18:00 근무 및 12:00~13:00 휴게시간을 규정에 직접 명시함.
- 가산수당 및 보상휴가 반영 (제30조 수정): 시간외 근무 시 50% 가산수당 지급 및 보상휴가 대체 근거를 신설함.
- 유급휴일 범위 확대 (제32조 수정): 주휴일(일요일 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유급휴일 범위를 명확히 함.
- 연차휴가 기준 정비 (제34조 수정): 근로기준법에 맞춰 80% 이상 출근 기준을 명시하고, 회계연도 기준(1/1~12/31) 계산 방식을 확정함.
- 출산휴가 기간 확대 (제38조 수정): 다태아 임신 시 출산휴가를 120일로 확대하는 등 법정 기준을 반영함.

보상휴가 및 사용촉진제 (제39조~제40조 신설): 8시간 초과 근무 시 1.5일 보상휴가 부여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함.

## <6> (제10장~제12장) 연봉제 전환 및 퇴직연금 도입

- 보수 지급 체계 일원화 (제44조~제45조 신설): 매월 25일 지급 및 발령일 기준 일할 계산 원칙을 수립하고, 기존 호봉제를 연봉제 체계로 개편함.
- 징계에 따른 연봉 제한 (제46조 신설): 징계 종류별로 견책(6개월), 감봉(12개월), 정직(18개월) 동안 연봉 조정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함.
- 퇴직연금 전환 (제50조 수정): 기존 퇴직적립금 방식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납입 기준을 임금총액의 1/12로 확정함.

## <7> 삭제 조항 및 별표 신설

- 기존 조항 삭제 (구 제7조, 제8조, 제9조): 승급·승진 추천, 특별승진, 승진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신설된 인사위원회 및 연봉제 규정으로 통합함.
- 기존 급여 규정 삭제 (구 제31조, 제32조, 제33조): 호봉책정, 급여책정, 급여계산 조항을 연봉제 전환에 따라 삭제함.
- 기존 퇴직금 산정 삭제 (구 제39조, 제40조): 퇴직 적립금 및 지급률 조항을 퇴직연금 도입에 따라 삭제함.
- 경조사 기준 신설 (별표 1): 배우자 출산(20일), 입양(20일) 등 확대된 경조사별 휴가 기준표를 신설함.

## □ 관련근거

- 규약 제5장 제22조, 제6장 제26조, 제8장 제39조
  - 개정안(2026.02.12. 결산이사회 승인)

###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① 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4. 재산 관리 및 주요 사업 집행 사항
5. 기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 제6장 각종 위원회

제26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연합회는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 및 동호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규정개정 및 복지위원회, 스포츠마케팅 및 교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로 다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제8장 사무처

제39조(사무처 운영 규정) ① 사무처 운영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직제·인사·복무·기록관리·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정한다.

②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③ 기록물은 전자적으로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장(위원회의 설치)  
 - 제정(2026.02.12. 결산이사회 승인)

제3조(위원회의 종류) ① 연합회는 목적사업 수행 및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대회 및 동호위원회
2. 대외협력위원회
3. 규정 개정 및 복지위원회
4. 스포츠마케팅 및 교육위원회
5. 스포츠공정위원회
-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한 위원회**

제4조(설치 근거) ① 위원회의 설치에 근거하며, 신설 또는 폐지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 처무 규정 제3장(인사위원회)  
 - 개정(2026.03.27. 1차 이사회 승인)

**제6조(설치) ① 직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처내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인사위원회 구성은 이사회에서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승진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징계 및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9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직원이 징계에 관한 사항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9조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시키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사에 참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사대상 직원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 ① 위원회는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출석위원의 연대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와 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석자는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회의내용 및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참석자 주요발언:

○ 사회자: 심의사항 2호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 처무규정 개정안입니다. 1차 규정 개정 및 복지위원회에서 검토가 돼서 지금 올라왔고요.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사무처 처무 규정하고 사무처 운영 내규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 체계를 단일화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를 신설하였고요. 그다음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했고, 그다음 보상 휴가 및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 내규에 있었던 호봉제를 연봉제로 개편을 하였고요. 확정기여형 DC로 퇴직연금을 전환하고 납입 기준 금액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 규정이 지금 시행이 되면 기존의 사무처 운영 내규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호 인사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의결된 지금 이 사무처 처무 규정 제3장에 의거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위원 구성을 위해서 위원 선임 권한을 회장님께 위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장: 경기단체연합회 사무처 처무 규정은 이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그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변경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김지선 차장님을 비롯해서 또 다른 회계 관련된 직원분들이 함께 검토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법적인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아 이게 그 지금 이러한 것들이 다 인사위원회에서 사실은 다뤄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인사위원회가 없다 보니 이사회에서 이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직원들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를 계속 열 수가 없으니 인사위원회를 임시적으로 좀 둘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인사위원회 구성의 건이 올라왔고요.

인사위원회 구성조차도 지금 뭐 누구로 지정하는 것보다, 이거는 단발성인 것들이 대부분일 테니 회장이 저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인사 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④ 논의결론: 원안대로 의결함

## [기타 사항]

### 1. 전 직원 대상 소통 채널 개설 및 알 권리 보장

○ 제안: 현재 사무처장 단독방을 통해서만 공지가 전달되다 보니, 바쁜 업무로 인해 각

종목단체 직원들에게까지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주요 내용: 연합회 소속 전체 직원(약 550명)이 연합회의 활동 사항과 경조사 공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소통창(채널톡 등) 개설을 요청함.

○기대 효과: 연합회 사업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도를 높이고, 정보 전달의 누락을 방지함.

## 2. 공지용 단톡방 운영 방식 정립

○제안: 사무처장 공지방에 경조사 알림이 올라왔을 때, 다수의 '추모 메시지' 댓글로 인해 정작 중요한 공지 본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

○협의: 공지방은 본래 목적에 맞게 공지 위주로 운영하고, 댓글을 지양하거나 댓글 작성에 제한된 채널 기능을 활용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 요청

## 3. 행정 업무 표준 서식(모델) 개발 제안

○제안: 각 종목단체마다 차량 운행일지, 출장 신청서, 출장 결과보고서, 유류비 산정 방식 등이 제각각이라 실무 행정에 혼선

○내용: 연합회 차원에서 모든 종목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행정 서식 모델'을 제작하여 배포해 줄 것을 제안

○기대 효과: 종목단체 간 행정 정합성을 높이고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함.

(폐회선언: 12시)